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정 선 군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3호 2022. 8. 17.(수)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901호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902호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 개정조례……5

○ 정선군 조례 제2903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8

○ 정선군 조례 제2904호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11

○ 정선군 조례 제2905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14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369호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28

○ 정선군 규칙 제1370호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46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2-102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고시·····55

○ 정선군 고시 제2022-105호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58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2-900호 정선 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 공사 완료 공고·····79

○ 정선군 공고 제2022-92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0

○ 정선군 공고 제2022-92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87

○ 정선군 공고 제2022-92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92

○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17호 관인등록공고·····9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82회 정선군의회(2022. 07. 29.)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7.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1호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의견제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정선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정 선 군 수 귀하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01.13.)으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권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2조)

나. 의견 제출 방법(안 제5조)

다. 의견제출 검토 및 의견의 반영(안 제7조 ~ 제8조)

라. 비밀 준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제282회 정선군의회(2022. 07. 29.)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7.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2호

정선군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의 개정) 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양도·전대(轉貸)”를 “양도”로 한다.

제2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양도·전대(轉貸)”를 “양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정선군아라리촌 운영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7조(수탁자의 의무·책임)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2. (생 략) 3. 담보제공이나 양도·전대(轉貸) 금지 4.·5. (생 략)	제7조(수탁자의 의무·책임) ----------. 1.·2. (현행과 같음) 3. ---------- 양도 ---------- 4.·5. (현행과 같음)

제2조(「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수탁자의 의무·책임)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2. (생 략) 3. 담보제공이나 양도·전대(轉貸) 금지 4. (생 략) ② (생 략)	제15조(수탁자의 의무·책임) ① ----------. 1.·2. (현행과 같음) 3. ---------- 양도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규정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을 위반하여 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전대금지 규정 삭제(안 제1조 ~ 안 제2조)

제282회 정선군의회(2022. 07. 29.)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7.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3호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호 중 “상해보험 가입”을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으로 한다.
제12조의2제4호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사기진작) 군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기진작)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해보험 가입	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4.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4. -- 10만원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반장 임무수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봉사자로서 사기진작 및 행정지원 능력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반장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3호)

- 건강검진을 추가함

나. 반장 통신요금 지원확대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4호)

- 연 상한 5만원 → 연 상한 10만원

제282회 정선군의회(2022. 07. 29.)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7.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4호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조성기준의 설정) 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

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설치된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조성기준의 설정(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7조)

제282회 정선군의회(2022. 07. 29.) 및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7.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905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납부방법에 의하지”를 “납부방법을 따르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법에 의하지”를 “방법을 따르지”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으로 한다.
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제21조에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에 의하되”를 “방법을 따르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할”을 “예외로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차장법」”을 “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2호에 따라”로, “「주차장법」”을 “법”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를 “별표 3과 같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8항의”로, “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중인 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받아 설치 중이거나 시설물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7조제2항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30㎡당 1대(시설면적/13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 다만,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호(실)당 0.7대 이상으로 한다.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 - 가구(호실)당 1대,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한다. ○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 세대당 1.5대 이상 ○ 세대는 가구, 호, 또는 실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

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 - 납부방법을 따르지 ---------- ---------- ---------- -----.
1.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1. ---------- 방법을 따르지 ---------- ---------- ---------- ----------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2시간 이하로 주차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② ---------- ----------

현 행	개 정 안
의 주차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3항---------- ----------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 ---------- -- 같은 법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① - ---------- ---------- ---------- ---------- ---------- ---------.
1.「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	1.---------- ---- 따라 ----------

현 행	개 정 안
단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제13조에 따라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제21조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 방법을 따르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	② ----------. ----------

현 행	개 정 안
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환부한다.	---------- ---------- ---------- 따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제한) ① ---------- ---------- ---------- ---------- ---------- ---------- ----. ---------- ---------- ------ 예외로 할 ----------.
②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무료, 유료 주차장 모두를 포함한다.)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한 날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견인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견인된 차량의 경우「자동차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	제16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

현 행	개 정 안
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법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건축물 및 농업용 창고를 건축할 때 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제6조제2호에 따라 ---------- ---------- ---------- 법 ---------- ---------- 제6조제1항에 따라 ---------- ----------. ---------- 따른 ---------- ---------- ---------- ---------.
②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 ---------- 별표 3과 같다.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 무상사용권을 부여	제19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 ---------- ---------- ----. ----- 제18조 각 호의 ----------

현 행	개 정 안
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 제10조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 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② -------- 따른 ----------.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생 략)	제20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 단서에 따라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3. ----------제3조제8항의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현 행	개 정 안
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률」에 따라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제안이유

가. 전기자동차 주차료 면제 규정 마련(충전을 위한 주차장 이용 시)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재설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 주요내용

가. 주차요금 면제 규정 추가(안 제4조제1항제4호)

-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2시간 이내 사용하는 경우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나.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4조, 안 제15조)

다.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별표 3)

라. 일본어 투 표현 정비

규 칙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7. 15.)에서 의결된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69호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법무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를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등에 대하여”를 “등을”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장치에 의하여”를 “장치를 통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작성함에 있어”를 “작성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장제2절(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회무를 통할”을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획관,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소장이”를 “직제상 국·관·과·소장 순으로”로 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28조제2항”을 “영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담당주사는”을 “팀장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담당이”를 “팀장으로”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법 제28조의 규정”을 “법 제35조”로, “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5조에 따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29조제3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0조제2항 단서 중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를 “관·과·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등에 있어”를 “등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을 “제1항에 따라 정한”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을 “팀장을”로 한다.
제46조제1항 전단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제56조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를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하는 경우”로 한다.
제59조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는 경우에”로 한다.
제61조 중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칙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주관부서”라 함은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 및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및 사업소를 말한다.	4.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
5. “심사”라 함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전에 기획관이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 등을 ---------- 제7조에 따라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10. “전자심의”란 회의 개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된 자료로써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0. ---------- - 장치를 통해 ----------.
제3조(입법안 작성)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어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작성하는 경우 ----

현 행	개 정 안
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협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 관·도 또는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와의 협의·인가·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제4조(사전협의) ① ---------- ---------- - 따라 ---------- ---------- ---------- ---------- ---------- ----------. ---- 긴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기관등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정선군조례·규칙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협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 ---------- 제3조에 따라 - ---------- ---------- ---------- ---------- ----------.
제5조(입법예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한 때에는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제5조(입법예고) ---------- ----------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입법을 예고하여야 한다.	----------.
제6조(심사)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심사) ①---------- 제3조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른 ---------- 따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보완 및 반려) 기획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보완 및 반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결과통보 등) ① (생 략)	제9조(결과통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하여 기획관에게 심의회에 부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연서대상 공표) ① 총무행정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관할구역안의 19세이상 주민총수(「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수)와 그 총수에 의하여 산정된 연서주민수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도보·군보·인터넷 등 전산망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한다.	
제11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총무행정관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대표자증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명서 교부신청(이하 “교부신청”이라 한다) 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교부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2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된 경우에는 총무행정관이 지정하는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에게 이관하고 기획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서 원본을 이관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대표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취지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부신청서를 보관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는 경우 덧붙여 관리한다. ③총무행정관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명요청권의 위임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임신고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원본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관하고	

현 행	개 정 안
기획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사항 공표) 주관부서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제10조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삭 제>
제13조(청구인명부 열람 및 확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명부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간, 군에서는 명부 전체를 읍·면에서는 당해 읍·면의 명부를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동안 청구인명부에 기재된 서명이 군 관 할구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인지, 중복서명 및 서명요청 기간내의 서명인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무효서명과 영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별지 제8호서식)에 대하여는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7일이 내에 심의회에 서명의 무효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기획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이유있음 :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 2. 이유없음 :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제14조(청구요건 심사 등) ①주관부서의 장은 청구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결정이 완료된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또는 서명의 무효결정이 청구요건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의한 심의·결정 요청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요건 심사에 관한 심의안건을 함께 상정할 수 있다.	
제15조(조례안의 작성 및 의회에의 부의) ①주관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가 수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8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청구인이 조례안 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작성한 조례안) 및 당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이를 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및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 하는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작성하되, 그 작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6조,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조례안 : 청구인의 청구취지 및 청구내용에 따라 작성 2. 검토의견서 :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작성 ③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안에 검토 의견서를 덧붙여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6조(구성) ① 심의회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담당관·과장·소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1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 5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구성) ① ---------- ---------- ---------- ----------. <단서 삭제>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	④---------- 회의에 관한 사

현 행	개 정 안
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다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관,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무를 총괄----------.---------- ---------- ---------- ---------- 직제상 국·관·과·소장 순으로----------.
제18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18조(심의회의 기능) ------- 영 제28조제1항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의안제출) ① (생 략) ②심의회에 상정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9조(의안제출) ① (현행과 같음) ②---------- ---------- -- 따라 ---------- -----.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제안설명) ①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담당주사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정비안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0조(제안설명) ①---------- ----- 팀장은 ----------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간사 등)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무 관련 업무 담당이, 서기는 법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1조(간사 등) ①---------- ---------- ---------- 팀장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획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받은 조례안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이 원안과 다르게 의결되었을 경우 법 제26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법 제35조---------- ---------- ---------- ---------- -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 -.
⑤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기획관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⑤---------- ---------- 법 제35조에 따라 ---------- ------.
제24조(공포안 작성) ① (생 략)	제24조(공포안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없	②제23조제5항에 따라 -------- ---------- ----------

현 행	개 정 안
음을 통보받은 경우 기획관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군수의 방침을 받아 이를 수정·확정하고 기획관에게 통보하여 공포하도록 한다.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질의문 반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제29조(질의문 반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실판단에 <u>의하여</u> 처리할 수 있는 질의	3. -------- <u>따라</u> ---------- --------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제30조(회시) ① (생 략)	제30조(회시) ① (현행과 같음)
②주관부서의 장이 기획관의 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소·읍·면장에게 회시할 때에도 사전에 기획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u>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u>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u>제29조에 따라</u> ----------.
제32조(심사대상)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기획감사실장</u>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심사대상) ---------- ---------- ---------- <u>기획관</u> ----------.

현 행	개 정 안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41조(소송의 수행) ① (생 략)	제41조(소송의 수행)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소송수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1. 2이상의 실·과·소에 관련되는 소송	1. ----- 관·과·소----------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43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생 략)	제43조(소송문서의 처리 및 기한)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의한 기일의 준수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 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따른 ---------- ---------- 등을 하는 경우 ----------.
제44조(소송의 착수) ① (생 략)	제44조(소송의 착수)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없이 당해 소송사건의 내용과 경우 등을 조사·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한 ---------- ----------.

현 행	개 정 안
제4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② (생 략) ③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주관부서의 담당주사를 포함 하여 2인이상의 일반직 공무원을 지정·지명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생 략)	제45조(소송수행 방침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팀장을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기획관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46조(소송수행자 등의 지정 및 절차) ① ---------- 따라 ----------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생 략) ②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	제47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현 행	개 정 안
사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5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제56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을 하는 경우 ---------- ---------- ---------- ----------.
제59조(사전협의 등)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기획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사전협의 등) ---------- ---------- 수행하는 경우에-- ---------- ----------.
제61조(국가소송의 수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국가소송의 수행) -------- ---------- ---------- ----- 규칙에 따른다.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01.13.)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일본어 투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0조 ~ 제15조)

나.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8조, 안 제23조)

다. 일본어 투 표현 정비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2022. 07. 15.)에서 의결된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7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규칙 제1370호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시간의 산정)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입력된 주차시간
2. 주차카드 부착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장에 주차시 주차카드를 부착한 때부터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주차표 등)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정선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따름)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4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과한다.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6조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

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인허가를 받기 전에 정선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징금 부과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및 영수증

원 부			
번호		주차장소	
차종	보통 · 소형	차량번호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료	금 원정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전 면)

주 차 표			
번호		주차장소	
차종	보통 · 소형	차량번호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료	금 원정		
○ 출차 시에 영수증과 교환하여야 합니다. ○ 주차증 훼손 또는 도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전 면)

영 수 증			
번호		주차장소	
차종	보통 · 소형	차량번호	
입차시간	시 분		
출차시간	시 분		
주차료	금 원정		
○ 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이 면)

※ 규격 : 가로 8㎝ × 세로 12㎝

(별지 제2호서식)

정 기 주 차 권

No

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차량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정기주차권은 위에 표시된 차량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이 정기주차권은 정선군 공영 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3. 이 정기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정 선 군 수 (직인)

※ 규격 : 가로 8㎝ × 세로 12㎝

(별지 제3호서식)

회 수 주 차 권(1일용)

금 원정

발행일 : 년 월 일

※ 주의사항

1. 이 회수권은 정선군 공영노외주차장 사용에 한함.
2. 이 회수주차권의 오손,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하지 아니함.

정 선 군 수 (직인)

※ 규격 : 가로 8㎝ × 세로 12㎝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통지서

차량번호 : 귀하

주 차 장 소	차 종	사 용 일 시	주 차 시 간	주 차 요 금	가산금	합 계	납 부 기 한	납 부 장 소
	보통 소형							

※ 만약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함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268㎜×190㎜(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제○○○호	20○○	주차장특별회계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부담금
세 목	금 액	
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부담금		
합 계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한 20○○년 ○○월 ○○일

납부장소 정선군 관내 농협

20○○년 ○○월 ○○일

정 선 군 수

납부자

주소

성명

영 수 필 통 지 서

제○○○호	20○○	주차장특별회계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부담금
세 목	금 액	
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부담금		
합 계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한 20○○년 ○○월 ○○일

정 선 군 금 고 (인)

정선군주차장특별회계

정수관 귀하

징수관		직급자	
수입금출납원		기장	
납부자			

영 수 증

제○○○호	20○○	주차장특별회계
(관 임시적세외수입		(항 부담금
세 목	금 액	
일반부담금부설주차장부담금		
합 계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기한 20○○년 ○○월 ○○일

정 선 군 금 고 (인)

납부자

주소

성명

(별지 제6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은행용)

발행번호		주차장특별회계
납부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입과목		

주차장법 제2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인)

수납인

과징금납부통지서(군청용)

발행번호		주차장특별회계
납부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입과목		

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군
금 고

정 선 군 수 귀하

수납인

과징금영수증(납부자보관용)

발행번호		주차장특별회계
납부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회사명)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장소		
세입과목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본
점, 지점

수납인

□ 제안이유

가. 1983년 제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2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지정,

나. 상위법령에 맞춰 조문 수정 및 별지 서식 재정비

□ 주요내용

가. 자동개폐기 도입에 따른 주차시간 산정방법 세분화(안 제2조)

나. 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비용납부 방법 신설(안 제6조)

다. 과징금 부과 규정 신설(안 제7조)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2-102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1차] 고시

농촌 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3차]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5일

정 선 군 수

1. 사업의 명칭 :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2. 사업의 목적

❍ 북평면 중심지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을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외 배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북평 문화광장
- 지 역 경 관 개 선 : 명품테마거리, 근대문화거리 조성
- 지 역 역 량 강 화 :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4. 사 업 비 : 6,125백만원(국비 3,938, 지방비 2,187)

5.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22.12.31.까지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7.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도시과 도시개발 033-560-2464)

■ 세부사업 변경계획

사 업 명	당초승인내역	변경승인내역
계	6개사업	6개사업
복지회관리모델링 (사업준공)	○ 사업비 : 1,689백만원 ○ 위 치 : 북평면 북평리 223 ○ 사업량 - 리모델링 415㎡ - 부대공 1식	○ 사업비 : 1,758백만원(증69백만원) ○ 위 치 : 북평면 북평리 223 ○ 사업량 - 리모델링 415㎡(실내인테리어,가구.집기증) - 부대공 1식
주차장조성 (사업준공)	○ 사업비 : 833백만원 ○ 위치 :북평면 북평리 693-4 ○ 사업량 - 주차장조성 2,687㎡ - 용지매수 2,687㎡	○ 사업비 : 892백만원(증59백만원) ○ 위치 :북평면 북평리 693-4 ○ 사업량 - 주차장조성 2,737㎡(디자인펜스,조경식재증) - 용지매수 2,737㎡(증50m2)
북평문화쉼터조성 (사업준공)	○ 사업비 : 1,063백만원 ○ 위치: 북평면 북평리 224-2 ○ 사업량 - 문화쉼터조성 2,863㎡ - 용지매수 2,863㎡ - 공연장.기타 1식 - 가로등 7주	○ 사업비 : 899백만원(감164백만원) ○ 위치: 북평면 북평리 224-2 ○ 사업량 - 문화쉼터조성 2,863㎡ - 용지매수 2,863㎡ - 공연장.기타 1식(전기/통신관급자재삭제) - 가로등 7주
명품테마거리 (사업계속)	○ 사업비 : 783백만원 ○ 위 치 : 북평 6길 일원 ○ 사업량 - 가로정비 L=370m,W=8~14m - 아스콘포장 3,623㎡ - 인도블록 1,034㎡, 빗물받이 36개소 - 가로등 19개소 - 미디어폴사인 5개소	○ 사업비 : 851백만원(증68백만원) ○ 위 치 : 북평 6길 일원 ○ 사업량 - 가로정비 L=370m,W=8~14m - 아스콘포장 3,861㎡ - 인도블록 1,034㎡, 빗물받이 38개소 - 노후관로교체공사 양안 691m(신설) - 가로등 19개소(삭제/기존가로등사용) - 미디어폴사인 5개소(삭제) - 상가간판교체 10개소
근대문화거리 (사업계획)	○ 사업비 : 784백만원 ○ 위 치 : 북평 7길 일원 ○ 사업량 - 가로정비 L=200m, - 도막형바닥재 A=651㎡ - 조형물 제작설치 7개소 - 도예벽화설치 24가구 - 세라믹아트타일 300㎡ - 천연현무암타일 224㎡ - 그래픽UV실사 154㎡ - 부대공/기타공사 1식	○ 사업비 : 716백만원(감68백만원) - 사업계획 중 ○ 위 치 : 북평 7길 일원 ○ 사업량 - 가로정비 L=200m, - 도막형바닥재 A=651㎡ - 조형물 제작설치 7개소 - 도예벽화설치 24가구 - 세라믹아트타일 300㎡ - 천연현무암타일 224㎡ - 그래픽UV실사 154㎡ - 부대공/기타공사 1식
지역역량 강화	○ 사업비 : 219백만원 ○ 사업량 - 주민교육,견학 29회 - 홍보마케팅,컨설팅,정보화 5식 - 마을경영지원 1식	○ 사업비 : 253백만원(증34백만원) ○ 사업량 - 주민교육,견학 36회(증7회) - 홍보마케팅,컨설팅,정보화 6식(증1식) - 마을경영지원 1식(12개월연장)

정선군 고시 제2022-105호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8월 5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도7호 접속도로 개설계획 및 선형불량구간 개선계획을 반영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및 군계획시설 (주차장) 변경 결정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사북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 별첨조서 참조

라.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도 : 실음생략

정선 군관리계획(주차장, 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조서

Ⅰ.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1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북 지장천변 1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452천 일원	1,555	감)15	1,540	강고 제207호 (98.10.15)	경미한 변경
변경	2	사북 지장천변 2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452천 일원	672	감)2	670	강고 제207호 (98.10.15)	경미한 변경

※ 인접도로(소로1-24호선) 확장을 위한 주차장 면적 축소

Ⅱ. 정선 군관리계획(사북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1. 사북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68,920	-	68,920	강고 제77호 (2002.4.8)	
기정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68-3철 일원	56,410	-	56,410	강고 제77호 (2002.4.8)	
기정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사북읍 사북리 344-2대 일원	96,779	-	96,779	강고 제77호 (2002.4.8)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	계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	자연녹지	보전녹지
합 계	222,109	29,081	189,165	1,251	2,612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	68,920	-	68,920	-	-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	56,410	-	56,410	-	-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	96,779	29,081	63,835	1,251	2,612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가. 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12	1,702	-	-	5	735	7	967
대로	-	-	-	-	-	-	-	-
중로	7	1,268	-	-	2	588	5	680
소로	5	434	-	-	3	147	2	287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8.5	주간선 도로	7,230 (330)	중로 1-3 고한리 373-2대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0-35임	일반 도로	고한초교	강고83호 (02.4.15)	
기정	중로	2	4	17	보조간 선도로	258	2호 광장 사북리 356-9대	중로 3-5 사북리 356-14대	일반 도로	스카이 호텔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25)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중로	3	5	12	집산 도로	123	중로 2-4 사북리 356-31대	중로 3-1 사북리 351-32도	일반 도로	사북 새 마을회관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10	12	보조간 선도로	645 (288)	중로 1-1 사북리 381-2도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1-18도	일반 도로	사북1교	강고74호 (91.6.18)	
기정	중로	3	12	9~ 13	국지 도로	57	소로 1-4 사북리 356-241도	중로 2-4 사북리 356-6도	일반 도로	호텔인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13	14	국지 도로	187	중로 3-12 사북리 354-8대	중로 3-10 사북리 354-11도	일반 도로	동원 복지회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45	중로 3-5 사북리 351-36대	중로 3-7 사북리 351-4대	일반 도로	-	강고300호 (03.12.13)	
기정	소로	2	46	8	국지 도로	72	중로 3-13 사북리 354-34대	1호 공공공지 사북리 354-30대	일반 도로	-	강고98호 (05.5.13)	
기정	소로	2	54	8.5	국지 도로	349 (30)	소로2-53 사북리 345전	광장1 사북리 345전	일반 도로	-	정선고110호 (20.5.22)	
기정	소로	3	5	6.5	국지 도로	314 (121)	사북구역계 사북리 산160-35임	중로 2-4 사북리 354-21대	일반 도로	-	정선고29호 (02.5.16)	
기정	소로	3	36	4	국지 도로	166	중로 2-4 사북리 356-27	중로 2-4 사북리356-119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사북 지장천변 3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3,103	-	3,103	정선고 제29호 (02.5.16)	

다. 광장

(1)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국도38 사북1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0대 일원	9,081 (1,125)	-	9,081 (1,125)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2	하이원 진입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6-2도 일원	4,084	-	4,084	강고 제83호 (02.4.15)	
기정	9	사북3광장	교통광장	사북읍 사북리 351-36대 일원	175	-	175	강고 제300호 (03.12.13)	

라. 공공공지

(1)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2,515	-	2,515	강고 제98호 (05.5.13)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가. 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합계	6	1,414	1	389	2	479	3	546
중로	4	976	-	-	1	430	3	546
소로	2	438	1	389	1	49	-	-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9	15	보조간선 도로	462 (430)	중로 3-1 사북리 산153-12임	중로 1-1 사북리 381-32도	일반 도로	사북역	강고74호 (91.6.18)	-
기정	중로	3	2	12	보조간선 도로	903 (394)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
기정	중로	3	3	12	집산 도로	130	중로 3-2 사북리 377-7철	소로 1-3 사북리 452-77도	일반 도로	경희 한의원	건고26호 (76.2.8)	-
기정	중로	3	4	12	집산 도로	79 (22)	중로 3-2 사북리 366-6도	2호 광장 사북리 367-17도	일반 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
기정	소로	1	3	8~ 12	국지 도로	389	중로 3-2 사북리 452-75천	중로 3-4 사북리 366-6도	일반 도로	사북시 장	강고26호 (79.2.8)	-
기정	소로	2	5	8	국지 도로	49	중로 3-1 사북리 산153-11임	중로 3-2 사북리 369-17대	일반 도로	사북역 전	강고26호 (79.2.8)	-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사북 역전1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66-72도 일원	1,404	-	1,404	강고 제300호 (2003.12.13)	

다. 광장

(1)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경관 광장	사북읍 사북리 452전 일원	781	-	781	정선고146호 (20.6.26)	지구단위 계획구역 (448㎡)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가. 도로

(1) 총괄표

구 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노선수		연장(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12	12	2,588	2,588	1	2	336	418	2	2	309	309	9	8	1,943	1,861
대로	1	1	106	106	-	-	-	-	-	-	-	-	1	1	106	106
중로	2	2	1,068	1,068	-	-	-	-	1	1	165	165	1	1	903	903
소로	9	9	1,414	1,414	1	2	336	418	1	1	144	144	7	6	934	852

(2)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106	중로 2-2 사북리 305-8대	중로 3-1 사북리 산77-3도	일반도로	범바위골 진입부	강고173호 (78.12.7.)	경미한 변경
변경	대로	3	1	25	보조간선도로	106	중로 2-2 사북리 305-8대	중로 3-1 사북리 산77-3도	일반도로	범바위골 진입부	강고173호 (78.12.7.)	
기정	중로	2	3	15	보조간선도로	1,720 (165)	대로 3-1 사북리 305-4도	사북구역계 사북리 452-36도	일반도로	사북여중	강고26호 (79.2.8)	
기정	중로	3	2	7~12	보조간선도로	903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경미한 변경
변경	중로	3	2	7~12	보조간선도로	903	대로 3-1 사북리 산77-2도	중로 3-1 사북리 366-12도	일반도로	사북교	건고194호 (76.12.7)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336	중로 3-2 사북리 452천	중로 3-2 사북리 372-11도	일반도로	지장천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2	51	8	국지도로	144	중로 3-2 사북리 307-28대	소로 3-4 사북리 307-1도	일반도로	-	강고26호 (79.2.8)	경미한 변경
변경	소로	2	51	8	국지도로	144	중로 3-2 사북리 307-28대	소로 1-24 사북리 307-1도	일반도로	-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4	6~7	국지도로	499 (82)	소로 3-3 사북리 452천	지구단위계획구역계 사북리 산143-11임	일반도로	-	강고26호 (79.2.8)	
변경	소로	1	24	10~12	국지도로	499 (82)	소로 1-3 사북리 452천	소로 2-53 사북리 산143-11임	일반도로	-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227	소로 1-1 사북리 344-133대	중로 3-2 사북리 344-67대	일반도로		강고300호 (03.12.13)	
기정	소로	3	33	6~7	국지도로	91	중로 3-2 사북리 317-35대	소로 3-29 사북리317-252도	일반도로	사북읍 사무소	강고26호 (79.2.8)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68	중로 3-2 사북리 344-55대	소로 2-53 사북리 344-169대	일반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소로	3	37	4.5~6	국지도로	202	중로 3-2 사북리 317-62대	소로 3-32 사북리 317-166대	일반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16호 (2016.3.4.)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63	중로 3-2 사북리 317-266대	소로 2-53 사북리 313-47대	일반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16호 (2016.3.4.)	
기정	소로	3	39	4~6	국지도로	201	중로 3-2 사북리 317-131주	소로 3-33 사북리 317-262대	일반도로	-	정선군고시 제2016-16호 (2016.3.4.)	

( )내의 연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부지내 연장임

※ 경미한 변경 : 시작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로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로 시설부지 면적의 5%미만의 변경

나. 주차장

(1)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	-	3,074	-	3,074	-	-
기정	20	구 사북초교 앞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45-1전	1,160	-	1,160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21	사북읍사무소 남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36대 일원	612	-	612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기정	22	사북읍사무소 북 주차장	사북읍 사북리 317-169대 일원	1,302	-	1,302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다. 녹지

(1)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중로2-1호선변 완충녹지	완충 녹지	사북읍 사북리 344-153종 일원	26,708 (3,912)	감) 41	26,667 (3,871)	강고 제83호 (2002.4.15)	

라. 하천

(1)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24	하천 (북일천)	소하천	사북읍 사북1리 18번지 일원	사북읍 사북1리 306-6번지 일원	-	5.6	9~ 20	110,183 (2,361)	정선군고시 제2016-25호 (2016.4.15.)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가구 및 획지 계획(변경없음)

1) 단위대지규모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주거지역	◦ 최소개발규모 : 60㎡, 최대개발규모 : 1,000㎡	
	상업지역	◦ 최소개발규모 : 150㎡, 최대개발규모 : 2,000㎡	
	공동건축	◦ 공동건축(규제 또는 권장)등이 표시된 경우 그에 합당하게 건축	

2)공동건축

구분	시설명	계획내용	비고
기정	◦ 공공건축을 토지소유자간 합의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필지의 경우 ◦ 일부 맹지형 필지	◦ 필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 여러 개의 필지에 1개의 건축물이 입지한 경우	

3) 대지분할가능선

구분	대지분할가능선	비고
기정	◦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 할 수 있는위치 지정	

4) 특별계획구역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대 일원	◦ 8m도로를 계획하여 연계통로 확보하여 기부체납 ◦ 대상지 남측에 접하는 중로3-13호선에 대하여 특별계획구역내로 폭원 4m의 도시계획도로를 추가로 조성 추가확보되는 도시계획도로(B=4m)는 기부체납 ※ 용적률은 기준 500%, 허용 600% 층수는 15층(53m)이하, 건폐율 80%, 불허용도1, 권장용도A로 규제함 ※ 전면으로는 10m의 건축한계선을, 대상지 좌측2m 건축한계선을 계획함 - 단, 특별계획구역내 건축물은 획지별 단일건축물로 일괄개발만 허용토록 한다.	

2. 가구 및 획지 계획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A1	4,470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4,494	-
기정	A2	175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175	-
기정	A3	1,000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1,012	-

기정	A4	11,640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10,736	-
기정	A5	3,140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3,103	-
기정	A6	3,570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3,636	-
기정	A7	2,170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700	-
기정	A8	4,250	사북읍 사북리 356-93번지 일원	4,282	-
기정	A9	488	사북읍 사북리 367-6번지 일원	485	-
기정	A10	11,549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11,348	-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기정	B1	1,650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1,650	
기정	B2	2,908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2,975	
기정	B3	8,168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8,561	
기정	B4	9,542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9,542	
기정	B5	1,235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1,404	
기정	B6	9,013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8,874	
기정	B7	5,700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6,754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구분	가구 번호	기정면적 (㎡)	획 지		증·감 (㎡)	비 고
			위 치	변경면적(㎡)		
변경	C1	2,703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2,632	감) 71	· 도로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1-24호선)
변경	C2	3,147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2,919	감) 228	· 도로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1-24호선)
기정	C3	12,316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12,316	-	-
기정	C4	4,516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4,516	-	-
변경	C5	1,68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1,683	감) 2	· 도로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소로1-24호선)
기정	C6	12,237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12,237	-	-
기정	C7	8,222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8,222	-	-
기정	C8	13,650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13,650	-	-
변경	C9	4,837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5,118	증) 281	· 도로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 (중로3-2호선)
폐지	C10	193	사북읍 사북리 산77-6번지 일원	-	감) 193	· 도로변경에 따른 블럭 폐지

						(대로3-1호선, 중로3-2호선)
기정	C11	163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163	-	-
기정	C12	4,690	사북읍 사북리 산72-12번지 일원	4,690	-	-
기정	C13	866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866	-	-
기정	C14	456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456	-	-
기정	C17	3,269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3,269	-	-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1) 불허용도(변경)

구분	건물전체 불허용도	1층전면 불허용도	
1 일반 상업 지역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창고시설 (100㎡ 이상)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기정	◦ 건축자재 관련업종 ◦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 등)
		변경	◦ 간이공작소 (목공소, 철공소, 알루미늄 공작업 등) ※ 건축자재 관련업종 삭제
2 고한 1구역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 창고시설 (100㎡ 이상) ◦ 공장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좌 동	
3 일반 주거 지역	◦ 자동차관련시설 (단, 주차장 제외) ◦ 창고시설 (100㎡ 이상) ◦ 공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는 신축건물에 한함) ◦ 학교보건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대지에만 적용)	◦ 좌 동	

2) 권장용도(변경없음)

구분	권장용도	비 고
A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위락시설	◦ 전층권장용도
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 전층권장용도
C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1층권장용도
D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판매시설 중 - 도·소매시장 - 상점	◦ 전층권장용도
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업무시설	◦ 전층권장용도

3) 건폐율(변경없음)

구 분	건 폐 율	비 고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

4)용적률(변경없음)

가.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율(%)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중심지 형성지역	400 ~ 500	500 ~ 600	사북시장 및 사북역세권 주변
기타 상업지역	300 ~ 400	350 ~ 500	-
주거지역	150 ~ 200	200 ~ 250	구 사북초등학교 주변

나. 용적률 완화적용(인센티브)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항 목			완 화 기 준	비 고
허용용적률	공동건축	규제사항	◦ 30%	-
		권장사항	◦ 40%	-
	경사지붕의 처리		◦ 20%	-
	경사지붕색채		◦ 10%	-
	건축한계선		◦ (조성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	-
	전층권장용도		◦ (권장용도 누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
	1층권장용도		◦ (지상접지층 권장용도면적÷총지상연면적)×기준용적률×1.5	-
	공개공지		◦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
	전면공지		◦ {(조성면적-설치의무면적)÷총대지면적}×기준용적률×1.5	-
	공동주차장 조성		◦ 기준용적률×0.1	-
상한용적률			◦ 시행지침 제11조 4항 참조	-

* 주 : '경사지붕의 처리'와 관련한 완화기준은 시행지침 제32조에 의한 경사지붕처리 조항의 ①항 권장사항을 준수하였을 경우 적용

5) 높이(변경없음)

구 분	최고높이	비 고
중심지 형성지역	12층 이하	-
기타 상업지역		
주거지역		

6) 배치(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음 ◦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되는 대지의 공지는 담장, 계단, 화단, 환기구, 건축물 부설 주차장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식물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선 후퇴부분은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 단차이가 없도록 처리하며, 보도와 동일한 포장, 또는 장식포장이 되도록 건축물 신축시 개발주체가 이를 조성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1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전면도로에서 1m 삭제 : 오류정정)	
기정	A2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용 도	◦ 광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A3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4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A5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블록 왼쪽면에서 2m	
기정	A6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450% 허용 : 500%~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A7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없음(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따른 삭제)	
기정	A8	사북읍 사북리 356-2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B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A9	사북읍 사북리 356-56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A	
			건 폐 율	◦ 80%	
			용 적 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1 / 권장용도 A(특별계획구역)	
			건 폐 율	◦ 80%	
			용 적 률	◦ 기준 : 500% 허용 : 600%	
			높 이	◦ 15층(53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 전면도로에서 10m 등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B1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2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없음(오류사항 정정)	
기정	B3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 500%, 허용 : 550%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4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5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용 도	◦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B6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 500%, 허용 : 500% ~ 6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B7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D, E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정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기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건축한계선(344-15학) 지정(조서누락 정정)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3	
			건폐율	○ 60%	
			용적률	○ 기준 : 200% 허용 : 2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및 전면도로에서 1m	
기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폐지	C10	사북읍 사북리 307-37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50% 허용 : 55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하천경계부터 4m	
기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용 도	○ 공개공지	
			건폐율	○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 해당사항 없음	
			높 이	○ 해당사항 없음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용 도	○ 불허용도 1 / 권장용도 C	
			건폐율	○ 80%	
			용적률	○ 기준 : 400% 허용 : 500%	
			높 이	○ 12층(42m)이하	
			배 치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형 태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색 채	○ 민간부분 시행지침 참조	
			건축선	○ 보차혼용통로, 전면도로에서 1m	

5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1.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개공지	◦ 위치 및 조성면적, 최소폭원 확보 및 인접대지와의 연계 조성	◦ 대형필지

2) 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 외벽처리	◦ 주변경관과 조화된 형태 및 재료사용 권장	-
옥외광고물	◦ 광고물의 난립방지 및 가로경관 고려 ◦ 지주형 간판의 설치제어 지침 제시 ◦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설치·표시금지 ◦ 판류형 간판은 원색사용 지양	-
색채	◦ 인접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
1층부 형태	◦ 개구부 통일성 유지 ◦ 투시형 셔터 권장	-
조명	◦ 가로경관 수준 향상 및 야간 경관 증진 ◦ 건축물의 외벽 조명 설치 권장	-
경사형 지붕	◦ 계획대상지 가로경관 증진과 옥상 경관 향상 ◦ 옥상면적의 일부 경사지붕 처리 (권장) - 주거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30% 이상 - 상업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40% 이상 - 공공용도 : 옥상 전체면적의 50% 이상	-
투수성 포장	◦ 투수성 포장재 : 흙, 잔디, 자갈, 기타 투수성 포장재 ◦ 전체 포장면적의 70% 이상을 투수성 포장 권장	-

3) 차량동선 및 주차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공동주차 출입구	◦ 주차통로의 확보가 어려운 간선도로변 대지	-
보차혼용통로	◦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보행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통로 확보 ※ 공동건축이행 또는 자율적인 분할·합병이 이루어져 보차혼용통로의 변경이 요구될 시에는 정선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음	-

2. 기타 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사북리1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A1	사북읍 사북리 351-1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개공지	
기정	A2	사북읍 사북리 351-3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A3	사북읍 사북리 351-3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정	A4	사북읍 사북리 356-7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개공지,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A5	사북읍 사북리 355-2번지 일원	◦ 차폐조경(B=2m), 차량진출입불허구간	
기정	A6	사북읍 사북리 356-230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기정	A7	사북읍 사북리 356-2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A8	사북읍 사북리 356-9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개공지	
기정	A9	사북읍 사북리 357-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A10	사북읍 사북리 354-1번지 일원	◦ 특별계획구역 ◦ 주차출입구,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전면공지	

2) 사북리2 지구단위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B1	사북읍 사북리 366-43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B2	사북읍 사북리 368-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B3	사북읍 사북리 366-56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기정	B4	사북읍 사북리 366-2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B5	사북읍 사북리 366-72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B6	사북읍 사북리 369-8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주차출입구	
기정	B7	사북읍 사북리 373-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공동주차출입구	

3) 사북리3 지구단위계획(변경)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정	C1	사북읍 사북리 346-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2	사북읍 사북리 344-45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3m), 공개공지	
기정	C3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4	사북읍 사북리 344-17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정	C5	사북읍 사북리 345-4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6	사북읍 사북리 344-67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3m)	
기정	C7	사북읍 사북리 317-191번지 일원	○ 공동주차출입구	
기정	C8	사북읍 사북리 317-108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9	사북읍 사북리 317-6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2m), 공동주차출입구	
폐지	C10	사북읍 사북리 307-37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1	사북읍 사북리 산76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2	사북읍 사북리 산72-14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기정	C13	사북읍 사북리 307번지 일원	○ 공개공지	
기정	C14	사북읍 사북리 344-133번지 일원	○ 해당사항 없음	
기정	C17	사북읍 사북리 313-11번지 일원	○ 보차혼용통로(B=4m), 공동주차출입구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2-900호

정선 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 공사 완료 공고

정선군 고시 제2003-62호(2003. 06. 19)로 최초 결정 되고 정선군 고시 제2021-171호(2021. 12. 2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정선 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사업 완료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 완료 공고 합니다.

2022년 8월 5일

정 선 군 수

1. 위 치 :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00-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선 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 사업
   나. 명 칭 : 정선 군계획시설[공간시설:유원지(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금회시행)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금회 시행	
공간시설	유원지	83,446㎡	■ 사업부지면적 : 5,041㎡ - 아우라지 복합관리센터 : 499.68㎡	

4. 사업시행자 및 주소
   가. 성 명 : 정선군수(문화관광과)
   나.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5. 사업기간
   가. 착수일 : 2020. 06. 29.
   나. 준공일 : 2022. 07. 08.

정선군 공고 제2022-924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역균형 뉴딜, 산사태 방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650명 → 655명 (증 5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50명 → 655명 (증 5명)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50명”을 “65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0명”을 “65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55	655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629	629			
4급	4	3	1		
4급·5급					
5급	29	15	4	1	9
6급 이하 계	595	595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5	5			
연구관					
연구사	5	5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2		2		
지도사	18	1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0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655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650명	1. ---------- 655명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2-92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역균형 뉴딜, 산사태 방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650명 ⇒ 총 655명 (증 5명)

나. 조정내역

□ 분야별 정원 : 5명 (지역현안 1, 국가정책 4명)

지역균형 뉴딜 (국가정책)	산사태 방지 (국가정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국가정책)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지역현안)
1명 (지방행정서기보) 1	1명 (지방녹지서기보) 1	2명 (지방간호서기) 2	1명 (지방학예연구사) 1

※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1명), 지방의회 정책지원관(1명)의 경우 의회 정원에 반영(2022.1.13.)

□ 부서별 정원 : 5명

행정국 전략산업과 (국가정책)	시설국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시설국 산림과 (산사태 방지)	정선읍 (주공사업)	신동읍 (주공사업)
1명 (지방행정서기보) 1	1명 (지방학예연구사) 1	1명 (지방녹지서기보) 1	1명 (지방간호서기) 1	1명 (지방간호서기) 1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규칙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2-92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6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확정에 따라, 지역균형 뉴딜, 산사태 방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등 추가정원 반영을 통한 국가정책사업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650명 → 655명(증 5명)

나. 정원관리 기관별 조정

(단위:명)

구 분	계	본 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기 존	650	305	131	18	196
조 정	655	308	131	18	196
증 감	+5	+3	-	-	+2

다. 부서별 정원조정 내역 : “별지와 같음”

3. 의견제출

○ 이 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20일간)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총무행정관실
❍ 전 화 : 033 - 560 - 2233
❍ F A X : 033 - 560 - 2590
❍ E-mail : publicljc@korea.kr
❍ 홈페이지 :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훈령 제 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3.(생략)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생략)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⑤ (생략)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2-17호

관인등록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인등록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5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관인 등록

관인명	등록사유	최초사용(예정일)	인영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2. 10월 중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관인 변경	2022. 10월 중	